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10. 26.>
-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別紙第68号書式] <改正 2017.10.2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二輪自動車使用廃止の届出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には該当するところにV印で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行日時	처리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携帯) 電話番号	
신고내용 届出内容	이륜자동차번호 二輪自動車番号		
	신고사유 届出事由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 기타 [] 用途廃止 [] 紛失・滅失 [] 盗難 [] その他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03条第1項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届出をいたします。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申請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捺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市長・郡守・区庁長又は 邑・面・洞・出張所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本人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市長・郡守・区庁長又は 邑・面・洞・出張所長が、下記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申請人が、市長・郡守・区庁長又は 邑・面・洞・出張所長の確認に同意しないか、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の規定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確認ができない場合には、その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者が直接提出してください。

신청인(대표자) 申請人 (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捺印)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二輪自動車の使用申告済証	수수료 없음 手数料 なし
첨부서류 添付書類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본어 붙여넣기 안됨) 1. 二輪自動車のナンバープレート (滅失、紛失または盗難にあった場合は除きます)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警察官署が発行する紛失または盗難届出確認書 (紛失や盗難の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1部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使用廃止の理由を証明する書類 (滅失やその他事由による使用廃止の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1部	

유의사항 注意事項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 二輪自動車の所有者は、二輪自動車の使用廃止を希望する場合に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日から15日以内に届出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
- 上記の事項に違反した場合には、関連規定に基づいて過料が科せら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4条第3項第2号)
-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携帯)電話番号は、あなたの二輪自動車の管理に必要な事項を案内・サポート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記入をお願いします。なお、番号を変更された場合には管轄申告官庁にご連絡ください。ただし、本人が希望しない場合は、書かなくても構いません。